



수출신고필증(적재전, 갑지)

※ 처리기간 : 즉시

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신고자 관세법인 워드 전승환 | | ⑤ 신고번호 43198-26-300069X | ⑥ 세관.과 020-E4 | ⑦ 신고일자 2026-03-04 | ⑧ 신고구분 B | ⑨ C/S구분 A |
| ② 수출대행자 가이랏트라이딩 (통관고유부호) 가이랏트-5-25-1-01-2 수출자구분 C 수출화주 가이랏트라이딩 (통관고유부호) 가이랏트-5-25-1-01-2 (주소) 인천광역시연수구 독배로82번길 21-1 (대표자) SAMIEV GHAYR (소재지) 21947 (사업자등록번호) 170-06-03405 | | | ⑩ 거래구분 11 일반형태 | ⑪ 종류 A 일반수출 | ⑫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 | |
| | | | ⑬ 목적국 TJ TADJIKI | ⑭ 적재항 KRINC 인천항 | ⑮ 선박회사 (항공사) | |
| | | | ⑯ 선박명(항공편명) | ⑰ 출항예정일자 | ⑱ 적재예정정보구역 02012012 | |
| | | | ⑲ 운송형태 10 LC | ⑳ 검사희망일 2026/03/04 | | |
| ③ 제조자 제조미상 (통관고유부호) 제조미상-9-99-9-00-0 제조장소 13501 산업단지부호 999 | | | ① L/C번호 | | ② 물품상태 O | |
| ④ 구매자 KAMOLOV AZAM UKTAMOVICH (구매자부호) TJKAMOLO0005S | | | ② 사전입시개청통보여부 N | | ⑤ 반송 사유 | |
| ⑥ 환급신청인 1 (1:수출대행자/수출화주, 2:제조사) 자동간이정액환급 NO | | | | | | |
| ● 품명·규격 (란번호/총란수 : 001/001) | | | | | | |
| ⑦ 품명 USED CAR | | | ⑧ 상표명 HYUNDAI | | | |
| ⑨ 거래품명 USED CAR PALISADE | | | | | | |
| ⑩ 모델·규격 | | ⑪ 성분 | ⑫ 수량(단위) | ⑬ 단가(KRW) | ⑭ 금액(KRW) | |
| (NO.01) USED CAR HYUNDAI PALISADE, KMHR281ABRU724005,2199CC | | | 1 (UN) | 38,900,000 | 38,900,000 | |
| ⑮ 세번부호 8703.33-8000 | ⑯ 순중량 2,450.0 (KG) | ⑰ 수량 1 (U) | ⑱ 신고가격(FOB) \$27,028 | ₩38,900,000 | | |
| ⑲ 송품장부호 GT-2026-0304-1-R1 | ⑳ 수입신고번호 | ㉑ 원산지 KR---N | ㉒ 포장갯수(종류) 1(GT) | | | |
| ④ 수출요건확인 (발급서류명) | | | | | | |
| ㉓ 총중량 2,450.0 (KG) | ㉔ 총포장갯수 1(GT) | ㉕ 총신고가격 (FOB) \$27,028 | ₩ 38,900,000 | | | |
| ㉖ 수입(₩) 0 | ㉗ 보험료(₩) 0 | ㉘ 결제금액 | FOB-KRW-38,900,000.00 | | | |
| ㉙ 수입화물 관리번호 | | ㉚ 컨테이너번호 | TBJU7198505 | Y | | |
| ※신고인기재란 쇼링업체 - 리더스카원 / 010-4685-3444 | | | ㉛ 세관기재란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(FR컨테이너 포함)에 적임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3조 제4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이므로 이를 위한 할 경우 동법 제277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'20.7.1일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에 대해 세관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,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unipass.customs.go.kr) | | | |
| ㉜ 운송(신고인) 기간 부터 까지 | ㉝ 적재의무기한 2026/04/03 | ㉞ 담당자 | ㉟ 신고수리일자 2026/03/04 | | | |

발행번호 : 202602924928(2026.03.04)

(1)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관세법 제251조 제277조)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 초소, 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2)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http://unipass.customs.go.kr)

* 본 신고필증은 전자문서(PDF파일)로 발급된 신고필증입니다.

* 출력된 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은 전자문서의 '시점확인필' 스텝프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